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493 |
|----------|-----|

2024. 1. 30.(화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발의일자 : 2024년 1월 15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1월 25일

-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호 환경산림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이용에 있어, “다자녀가정”의 자녀수를 변경한 사용료 감면 및 재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숙박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과 이용객의 퇴거 조치 등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라 “다자녀가정”의 자녀수(3명 → 2명) 정의를 변경(안 제3조제11호)
- 예약한 사람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정의된 “재난”으로 자연휴양림 이동·접근이 곤란한 경우,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(안 제13조제5항)
- 자연휴양림관리자(이하 “관리자”)의 요청에 따라 “재난”으로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숙박시설 이용객이 사용 도중 퇴실하는 경우 납부한 시설사용료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(안 제14조제5항)
- “재난”으로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, 시설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퇴거하도록 할 수 있게 규정(안 제15조)
- 시설 사용료 항목 신설(안 별표1)

3. 검토보고 요지 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- 「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라 “다자녀가정”이란 둘째아(兒)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,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에 부합된 숙박시설 사용료 부과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함.
 - * 본 조례의 “다자녀가정” :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 “3인 이상” → “2인 이상”으로 변경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항에 정의된 “재난”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이동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, 재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납부한 시설 사용료 전액 환급과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하도록 하는 것은 이용객의 안전과 적절한 서비스 조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함

-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규에 위반되거나 침해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례안 예고('23. 12. 20.~'24. 1. 9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, 정부 저출산 정책 및 「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」에 따라 “다자녀가정”의 자녀수 변경은 정당하며,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상의 ❶“재난”에 따라 예약한 사람이 자연휴양림으로 이동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과 ❷“재난”으로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객이 사용 도중 퇴거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전액을 환급하는 규정은 이용객의 안전과 공익적서비스 눈높이 맞춤 차원의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.
- 또한, 조령산자연휴양림 이용제한 규정을 살펴보면, “재난”으로 인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사정(❶, ❷) 등에 따라 시설이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퇴거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이행에 부합하는 타당한 사항임.
- 다만, 조령산자연휴양림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이용객들 눈높이에 맞는 숙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신설 숙박시설(트리하우스)의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은 적절한지 의문임.
 - 1) 우선 시설사용료 선정에 트리하우스 시범운영 간의 설문조사(적정금액) 결과*를 선정사유로 하는 것은 사실, 시설사용료** 산정 측면에서 객관적이지 못하며 통계 표본(60여명) 이마저도 신뢰할 수준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움.

*** 시설사용료 설문조사결과**

- (1호: 62㎡, 2호: 51㎡) 총 조사자 64명 중 48명(75%) 응답
 - ☞ 96,000 ~ 160,000원 선택(70.8%)
- (3호: 31㎡) 총 조사자 64명 중 22명(34%) 응답
 - ☞ 75,000 ~ 125,000원 선택(54.5%)

**** [별표 1] : 시설사용료(제9조제1항 관련)**

(단위: 원)

| 구 분 | 기 준 | 1일 요금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| | 비수기 주중 | 성수기 및 주말 |
| 트리하우스 | 1동 / 4인 【1호】 (31제곱미터) | 96,000 | 160,000 |
| | 1동 / 4인 【2호】 (51제곱미터) | 96,000 | 160,000 |
| | 1동 / 4인 【3호】 (31제곱미터) | 48,000 | 80,000 |

2) 타휴양림* 트리하우스 시설사용료 비교 또한 표본(2개소) 부족과 비교·분석 모델이 적정한 대상인지도 모호함.

* 무주향로산자연휴양림(26㎡: 4인실, 단층 구조) : 비수기 70천원, 성수기 90천원만인
 산자연휴양림(66㎡: 8인실, 2층 구조) : 비수기 75천원, 성수기 134천원

○ 이에 소관부서에서는 타 자치단체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이용요금 통계 표본을 충분히 확보한 비교·분석 등으로 조령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충북 레이크파크 부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6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7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1호 중 “3인”을 “2명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5항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 접근”을 “예약한 사람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이동하거나 접근하는 것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 도중 퇴거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환급한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일부 제한할”을 “일부를 제한하거나 퇴거하도록 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시설물을 사용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 1]

시설사용료(제9조제1항 관련)

□ 시설사용료 기준

(단위 : 원)

| 구 분 | 기준 | 1일 요금 | | 비 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| | 비수기 주중 | 성수기 및 주말 | |
| 숲속의 집 | 1동/2인 (33.2제곱미터) | 48,000 | 80,000 | |
| | 1동/4인 (36.0~37.4제곱미터) | 48,000 | 80,000 | |
| | 1동/6인 (32.9~46.7제곱미터) | 60,000 | 100,000 | |
| | 1동/8인 (50.8~54.8제곱미터) | 78,000 | 130,000 | |
| | 1동/10인 (58.1~63.4제곱미터) | 96,000 | 160,000 | |
| | 1동/12인 (116.6제곱미터) | 120,000 | 200,000 | |
| 트리하우스 | 1동/4인(1호) (31제곱미터) | 96,000 | 160,000 | |
| | 1동/4인(2호) (51제곱미터) | 96,000 | 160,000 | |
| | 1동/4인(3호) (31제곱미터) | 48,000 | 80,000 | |
| 복합휴양관 | 1실/4인 (25.2제곱미터) | 42,000 | 70,000 | |
| | 1실/6인 (37.8제곱미터) | 54,000 | 90,000 | |
| | 1실/10인 (62.9제곱미터) | 84,000 | 140,000 | |
| 무궁화관 | 1실/4인 (32.4제곱미터) | 48,000 | 80,000 | |
| | 1실/6인 (42.6제곱미터) | 60,000 | 100,000 | |

[별표 1]

시설사용료(제9조제1항 관련)

□ 시설사용료 기준

(단위 : 원)

| 구 분 | 기준 | 1일 요금 | | 비 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| | 비수기 주중 | 성수기 및 주말 | |
| 숲속의 집 | 1동/2인 (33.2제곱미터) | 48,000 | 80,000 | |
| | 1동/4인 (36.0~37.4제곱미터) | 48,000 | 80,000 | |
| | 1동/6인 (32.9~46.7제곱미터) | 60,000 | 100,000 | |
| | 1동/8인 (50.8~54.8제곱미터) | 78,000 | 130,000 | |
| | 1동/10인 (58.1~63.4제곱미터) | 96,000 | 160,000 | |
| | 1동/12인 (116.6제곱미터) | 120,000 | 200,000 | |
| 트리하우스 | 1동/4인(1호) (31제곱미터) | 96,000 | 160,000 | |
| | 1동/4인(2호) (51제곱미터) | 96,000 | 160,000 | |
| | 1동/4인(3호) (31제곱미터) | 48,000 | 80,000 | |
| 복합휴양관 | 1실/4인 (25.2제곱미터) | 42,000 | 70,000 | |
| | 1실/6인 (37.8제곱미터) | 54,000 | 90,000 | |
| | 1실/10인 (62.9제곱미터) | 84,000 | 140,000 | |
| 무궁화관 | 1실/4인 (32.4제곱미터) | 48,000 | 80,000 | |
| | 1실/6인 (42.6제곱미터) | 60,000 | 100,000 | |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11. “다자녀 가정”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<u>3인</u>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.</p> <p>12. ~ 17. (생략)</p> <p>제13조(위약금 처리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</u>」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제14조(환불처리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<u>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요금에 대하여</u></p> | 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----- ----- <u>2명</u> -----.</p> <p>12. ~ 1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위약금 처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예약한 사람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이동하거나 접근하는 것</u> -----.</p> <p>제14조(환불처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</u>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자연휴양</p> |

환불하여야 한다.

제15조(이용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
3. 산불·산사태 등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

4. (생략)

림 이용객이 사용 도중 퇴거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환급한다.

제15조(이용제한) -----

----- 일부를 제한하거나 퇴거하도록 할 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

4.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발취

□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

제21조의5(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)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2. 21.>

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8. 2. 21.>[본조신설 2015. 1. 20.][제목개정 2018. 2. 21.]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□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

제2조(정의)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 [시행 2023. 4. 7.]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○ 사 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숙박동 신설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추가하고 다자녀 정의 수정 및 재난시 이용제한, 환불처리 등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○ 작성자 :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은